

엘리프세종6-3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공급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6-3 M4블록

■ 공급대상 : 총 1,035세대 중 공공분양주택 560세대 (전용면적 74A㎡ 328세대, 84A㎡ 116세대, 84B㎡ 116세대)

엘리프세종6-3 콜센터(044-865-6177) 및 청약홈 콜센터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에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인)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전체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료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 및 (민간사전청약)당첨자 선정후에도 무효처리합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사이버 주택전시관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주택전시관(www.엘리프세종6-3.com)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서류제출 시 당첨자에 한해 주택전시관 관람을 진행할 예정이나, 코로나19 및 주택전시관 상황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www.엘리프세종6-3.com)를 통해 공지 예정)
- 사정에 따라 공급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www.엘리프세종6-3.com)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이오니 주요 공급일정별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권의 증도금 집대대출규제로 인하여 증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증도금 집대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격으로 증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알 려 드 립 니 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2.22.(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054이며, 공고문은 엘리프세종6-3 홈페이지(www.엘리프세종6-3.com) 및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사이버 주택전시관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제출 시 당첨자에 한해 주택전시관 관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이버 주택전시관은 2022.02.22.(화)에 오픈 예정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이 경우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22-6호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의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 공급세대수의 60%를 우선공급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 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1) '21.02.22일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 (2) '21.02.22일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 (3)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 (4) (1) 또는 (2)에 해당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 (5)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6)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뉘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대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산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제한기간은 10년**이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의해 **전매제한은 일반공급하는 주택이 4년**, 특별공급(장애인, 신혼부부 등)하는 주택이 **5년**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영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체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주택법」 제63조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해당제한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해당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해당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당첨자 관리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급대상별 입주자저축 및 자산·소득 요건 등 요약 (각 대상별 상세요건을 반드시 이 공고문의 'I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에서 확인 후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 **공급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납입인정 기간, 횟수 등)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각 유형의 상세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필요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불필요	필요 (6개월, 6회 이상)	필요 (6개월, 6회 이상)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필요
자산요건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소득요건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세대주 요건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당첨자 계약체결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일 정	'22년 03월 04일(금)	'22년 03월 07일(월)	'22년 03월 08일(화)	'22년 03월 15일(화)	'22년 03월 16일(수) ~ 03월 27일(일)	'22년 04월 18일(월) ~ 4월 24일(일)	사업주체 홈페이지 고지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건본주택 내방 (10:00 ~ 17:00)	건본주택 내방 (10:00 ~ 16:00)	엘리프세종6-3 (www.엘리프세종6-3.com)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청약 Home)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 Home"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체 건본주택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1-4번지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방문 가능 일시가 상이하오니 방문 전 엘리프세종6-3(www.엘리프세종6-3.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일시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의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접수 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사업주체 홈페이지(www.엘리프세종6-3.com)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O	O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투기과열지구(세종특별자치시 해당됨)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수분양자는 동법 제3조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취득을 위한 자금조달(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 포함) 및 입주 계획'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체결 시 '주택취득 자금 조달(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 포함) 및 입주계획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로 미제출 시 수분양자가 직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모두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해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해당첨 제한 사례 참고]

*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해당첨 제한되며, 아래 예시는 해당첨제한 기간 강화 이전에 당첨된 사례로서 종전의 해당첨 제한규정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 2015년 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년 6월) 해당첨 제한
- 2014년 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년 9월) 해당첨 제한
- 2016년 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1년 7월) 해당첨 제한
-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님)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해당첨 제한 기간 없음
- 2017년 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20년 7월) 해당첨 제한

해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해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 당첨사실조회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주택법」 제63조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에 의거 **해당첨 제한은 10년**이 적용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유형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 불가함에 유의)
- **공급유형별·순위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터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 및 (민간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단,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 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함)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해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조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I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행정중심복합도시 6-3 M4블록 총 1,035세대 중 : 공공분양주택 지하2층~지상29층(최고층수) 16개동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 560세대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주택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대지면적(㎡)	공급세대수							최고층수	최하층배정세대수	입주예정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면적(계)	계	특별공급								일반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국가유공자				

		합 계										560	54	169	142	26	26	59	84	29	20		
6-3 M4	074.9800A	74A	선택	74.9800	26.0505	9.9633	53.7045	164.6983	58.5606	328	32	99	82	16	16	33	50	29	12	2025년 01월 예정			
	084.9900A	84A	선택	84.9900	29.5283	11.2935	60.8742	186.6860	66.3785	116	11	35	30	5	5	13	17	29	4				
	084.7100B	84B	선택	84.7100	29.4310	11.2563	60.6736	186.0709	66.1599	116	11	35	30	5	5	13	17	29	4				

-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급회 공급하는 주택의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건립**되며, 홈페이지(사이버 견본주택)에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 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천원]

주택형	주택타입	층별	주택가격	계약금 10%	1차 중도금 10%	2차 중도금 10%	3차 중도금 10%	4차 중도금 10%	5차 중도금 10%	6차 중도금 10%	잔금	융자금 (주택도시자금)
				계약시	22.07.20	22.11.21	23.04.20	23.09.20	24.02.20	24.06.20		
074.9800A	74A	5층 이상	406,500	40,650	40,650	40,650	40,650	40,650	40,650	40,650	46,950	75,000
		4층	398,400	39,840	39,840	39,840	39,840	39,840	39,840	39,840	44,520	75,000
		3층	390,200	39,020	39,020	39,020	39,020	39,020	39,020	39,020	42,060	75,000
		2층	382,200	38,220	38,220	38,220	38,220	38,220	38,220	38,220	39,660	75,000
		1층	373,900	37,390	37,390	37,390	37,390	37,390	37,390	37,390	37,170	75,000
084.9900A	84A	5층 이상	471,300	47,130	47,130	47,130	47,130	47,130	47,130	47,130	66,390	75,000
		4층	462,000	46,200	46,200	46,200	46,200	46,200	46,200	46,200	63,600	75,000
		3층	452,500	45,250	45,250	45,250	45,250	45,250	45,250	45,250	60,750	75,000
		2층	443,200	44,320	44,320	44,320	44,320	44,320	44,320	44,320	57,960	75,000
		1층	433,800	43,380	43,380	43,380	43,380	43,380	43,380	43,380	55,140	75,000
084.7100B	84B	5층 이상	461,400	46,140	46,140	46,140	46,140	46,140	46,140	46,140	63,420	75,000
		4층	452,200	45,220	45,220	45,220	45,220	45,220	45,220	45,220	60,660	75,000
		3층	443,200	44,320	44,320	44,320	44,320	44,320	44,320	44,320	57,960	75,000
		2층	434,000	43,400	43,400	43,400	43,400	43,400	43,400	43,400	55,200	75,000
		1층	424,700	42,470	42,470	42,470	42,470	42,470	42,470	42,470	52,410	75,0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융자금 안내>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자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는 주택도시자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인 범위 내에서 대한(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자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중도금 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인해 LTV에 주택도시자금이 포함됨에 따라 중도금 대출시 주택도시자금에 대한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 입주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한일(실제 주택도시자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4.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농협은행	당첨자 발표 이후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

-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 계좌의 경우 상기 계좌와 상이하거나 가상계좌로 관리될 수 있으며, **가상계좌의 경우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멸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주택 내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예시 : 101동1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 기재)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발코니 확장금액 및 추가선택품목 안내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기간 내 신청 : 22.04.18.(월) ~ 22.04.24.(일) 7일간]

(단위:원, 부가가치세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가격		계약금(10%)		잔금(90%)	
		계	계약시	계	계약시	입주지정일	입주지정일
074.9800A	74A	7,096,000	709,600	6,386,400			
084.9900A	84A	7,400,000	740,000	6,660,000			
084.7100B	84B	7,061,000	706,100	6,354,900			

■ 플러스 옵션 금액 [계약기간 내 신청 : 22.04.18.(월) ~ 22.04.24.(일) 7일간]

(단위:원, 부가가치세포함)

구분	품목	해당타입	제조사	모델명(제품번호)	설치위치	공급가격		계약금(10%)		잔금(90%)	
						계	계약시	계	계약시	입주지정일	입주지정일
1	3연동 중문	전타입	더지코		현관	1,350,000	135,000	1,215,000			
2	인덕션	전타입	쿠첸	CIR-B31H3312FLBI	주방	500,000	50,000	450,000			
3	식기세척기	전타입	LG전자	DUBJ2GA	주방	1,750,000	175,000	1,575,000			
4	빌트인냉장고 /김치냉장고	74A	LG전자	빌트인 냉장고 : BC4S1AA1 (S-맨해튼미드나잇/실버/실버) 빌트인 김치냉장고 : BC3K1AA1 (S-맨해튼미드나잇/실버/실버)	주방	6,800,000	680,000	6,120,000			
		84A		빌트인 냉장고 : BC4S1AA1 (S-맨해튼미드나잇/실버/실버) 빌트인 김치냉장고 : BC3K1AA1 (S-맨해튼미드나잇/실버/실버)		6,500,000	650,000	5,850,000			
		84B		빌트인 냉장고 : BC4S1AA1 (S-맨해튼미드나잇/실버/실버) 빌트인 김치냉장고 : BC3K1AA1 (S-맨해튼미드나잇/실버/실버)		6,500,000	650,000	5,850,000			
5	주방벽체·상판 엔지니어드스톤	74A	계룡OEM	주방벽체 : 타일 → 엔지니어드스톤	주방	1,350,000	135,000	1,215,000			
		84A		주방상판 : 인조대리석 → 엔지니어드스톤		950,000	95,000	855,000			
		84B				1,000,000	100,000	900,000			
6	알파룸 변경	84A	계룡OEM	침실1 확장 + 드레스룸 수납특화	알파룸	2,800,000	280,000	2,520,000			
7	거실/주방 바닥타일 + 아트월 타일 복도 연장	74A	계룡OEM	거실, 주방, 복도 바닥 : 강마루 → 폴리싱타일 복도 벽체 : 도배 → 아트월 타일	거실, 주방, 복도	2,100,000	210,000	1,890,000			
		84A				2,200,000	220,000	1,980,000			
		84B				2,400,000	240,000	2,160,000			
8	거실/주방 라인등	74A	계룡OEM	라인형 조명, 디밍(거실적용, 주방제외), 온오프	거실, 주방	500,000	50,000	450,000			
		84A				800,000	80,000	720,000			
		84B				850,000	85,000	765,000			
9	미세먼지 안전복합창	74A	원가드	미세먼지 적용 : 거실, 주방	거실, 주방	2,400,000	240,000	2,160,000			
		84A				3,100,000	310,000	2,790,000			
		84B				2,900,000	290,000	2,610,000			
10	시스템에어컨	74A	LG	기본	거실, 침실1	3,300,000	330,000	2,970,000			
				전실	거실, 침실1,2,3	5,600,000	560,000	5,040,000			
				기본	거실, 침실1	3,300,000	330,000	2,970,000			
		침실1 확대		거실, 침실1,2,3	5,900,000	590,000	5,310,000				
		전실		거실, 침실1,2,3, 알파룸	6,500,000	650,000	5,850,000				
		84B		기본	거실, 침실1	3,300,000	330,000	2,970,000			
전실	거실, 침실1,2,3	5,900,000	590,000	5,310,000							
11	공용욕실 비데	전타입	엔씨엠	NB-1160C	공용욕실	280,000	28,000	252,000			
12	복합환풍기	전타입	힘펠	FHD-P150S1	공용욕실	350,000	35,000	315,000			
					부부욕실	350,000	35,000	315,000			
13	세대환기 시스템	전타입	경동나비엔	TAC521	거실	1,200,000	120,000	1,080,000			
14	무기질도료시공 (침실/드레스룸)	74A	SEF	침실1 확대	침실1, 침실2, 침실3, 드레스룸	2,800,000	280,000	2,520,000			
		84A			침실1+알파룸 통합, 침실2, 침실3, 드레스룸	3,300,000	330,000	2,970,000			
		84B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드레스룸	3,800,000	380,000	3,420,000			
15	침실3 불박이장	전타입	계룡OEM	침실3 불박이장 추가	침실3	1,500,000	150,000	1,350,000			
16	주방 수납특화	84A,84B	계룡OEM	주방 장식장 및 장식벽 추가	주방	3,500,000	350,000	3,150,000			
17	열차단필름	74A	후퍼옵틱	부분	거실, 침실2, 침실3	1,500,000	150,000	1,350,000			
				전체	거실, 침실1(발코니만), 침실2, 침실3, 주방, 다용도실	2,100,000	210,000	1,890,000			
				부분	거실1, 거실2, 침실2, 침실3, 알파룸	1,950,000	195,000	1,755,000			
		84A		전체	거실1, 거실2, 침실1(발코니만), 침실2, 침실3, 알파룸, 주방, 다용도실	2,550,000	255,000	2,295,000			
		84B		부분	거실1, 거실2, 침실2, 침실3	1,700,000	170,000	1,530,000			
				전체	거실1, 거실2, 침실1(발코니만), 침실2, 침실3, 주방, 다용도실	2,300,000	230,000	2,070,000			
84B											
18	공용욕실	전타입	계룡OEM	욕조→샤워부스 선택	공용욕실			무상옵션			

6.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범영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범영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은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자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확장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벽체칸막이 제거 및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입주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세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 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과 발생(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 제기불가)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출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므로,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출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세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세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침실1 이중창),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안에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입주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및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입주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오수 배관누출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하형 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 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내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입주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플러스 옵션관련 내용

- 폴리스 타일 또는 포슬레인 타일 시공은 타입별로 상이하며 거실+주방+복도이며, 미선택시 침실과 동일한 강마루가 설치되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은 해당 옵션 선택 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부가세 포함)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른 기본 설치 품목인 벽체 에어컨냉매 매립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며, 미설치 시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유상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침실1(안방), 침실2, 침실3, 알파룸(84A)에 냉매배관이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가동 시 발생하는 응축수 배수를 위해 설치되는 드레인 배관은 세대 내 일부 벽체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벽체-상판 엔지니어드스톤 옵션 선택 시 벽체 타일시공에서 엔지니어드스톤으로 변경 시공되며, 자체 특성에 따라 벽체 및 상판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벽체-상판 엔지니어드스톤 옵션 선택 시 벽체 시공에 따른 자체 이음부위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이색 및 단 차이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안전복합창 옵션 선택 시 안전기능이 추가된 방충량이 시공되며, 거실 및 주방에는 미세먼지 기능이 추가된 복합창이 설치됩니다.
- 무기질 도료 시공 옵션 선택 시 각 세대별 침실 및 드레스룸에 시공되므로 최종 마감재 시공전 무기질도료를 시행하므로 육안상 확인 어려우며, 최종 마감재 등을 칠거 후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세대환기시스템 옵션 선택 시 기기내부에 필터가 설치되며, 주기적인 필터 교체 등은 입주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필터교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빌트인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는 지정된 색상으로만 제공 됩니다.
- 중문 옵션 선택시 각 타입별 색상 및 마감재 사양등 이 다르므로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을 계약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또는 자체발주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업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유상옵션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단, 수분양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 할 경우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유상옵션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84A 알파룸 옵션 시 침실1 에어컨 냉매배관이 미시공 되어,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적용도 제한 됩니다.

8.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발코니 확장 금액

구분	납부시기	금액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계약 시	공급 금액의 10%	농협은행	당첨자 발표 이후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잔금	입주 시	공급 금액의 90%			

■ 플러스 옵션 금액

구분	납부시기	금액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계약 시	공급 금액의 10%	농협은행	당첨자 발표 이후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잔금	입주 시	공급 금액의 90%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발코니확장 납부계좌, 플러스옵션 납부계좌는 각각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분주택 내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예시 : 101동1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 기재)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구분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① 문	목재문 [문틀(내틀제외) 및 문짝 도어레버, 경첩, 문선] ABS문 [문틀(내틀제외) 및 문짝 도어레버, 경첩, 문선] 복층타입 세탁실 도어 [문틀(내틀제외) 및 문짝 도어레버, 경첩, 문선]	각실 PL창호(발코니내부 PL창호 포함), 대피공간 방화문, 세대현관 방화문 및 디지털도어록, 실외기 시스템루버, 발코니2 도어
② 바닥	바닥재(강마루 및 현관바닥타일 및 디딤판 인조석), 걸레받이 발코니바닥타일(시멘트몰탈 포함) 및 재료분리대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③ 벽	벽지(초배포함), 거실아트월, 주방벽타일(타일붙임몰탈 포함), 발코니벽 도장, 신발장, 세대 내 팬트리 도어 및 시스템선반, 발코니 수전, 발코니2(복층타입 세탁실) 내 선반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경량콘크리트판넬(세대칸막이벽), 거실월배, CRC보드
④ 천장	천장지(초배포함), 우물천장, 반자동돌림(몰딩포함), 발코니천장 도장, 자동빨래건조대	천장을 위 석고보드, 커튼박스,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소방감지기, 동작감지기
⑤ 욕실	천장재(천장틀포함), 위생기구(양변기, 비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액세서리류, 수전류, 샤워부스, 욕실장, 욕실팬, 욕실벽 및 바닥타일(타일붙임몰탈 포함), 젤다이 상부 인조대리석, 배수구 커버	액체방수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전기배관 및 배선, 부부욕실 비상호출기
⑥ 주방기구	주방기구 및 기구(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주방가전 일체(하이브리드룩탑, 레인지후드 등), 설비수전류	소방검사 관련 자동식소화기 및 주방소화기, 주방배기덕트
⑦ 조명기구	부착형, 노출형, 벽부형 조명등기구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커버포함), 매입등기구

마이너스 옵션 = [기본분양가 (-) 마이너스 옵션]

(단위 : 원 / 부가가치세포함)

주택형(약식표기)	74A	84A	84B
금액	27,348,460	31,108,890	31,006,400

마이너스 옵션 시 발코니 확장 = [기본분양가 (-) 마이너스 옵션 (+) 마이너스 옵션 시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포함)

주택형(약식표기)	74A	84A	84B
금액	4,896,240	5,106,000	4,872,090

-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 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미감 관련품목,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안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공용배기방식에 적합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업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2.5%(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 단, 주택도시기금 용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용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기간별 차등 없이 연 6.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율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처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불출)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잔금 납부 일을 말한다.)이후에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발생하는 재산세, 관리비, 전기·가스 등 제세공과금과 관계 법령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통보 예정**입니다.
- 입주 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II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1.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타 지역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21.02.22일 이후 (1)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2)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020.09.29.)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공급 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2.22.)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60%	· 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21.02.22. 이전부터 계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2021.02.22.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기타지역	4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전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

- ※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사업주체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 우선비율로 배분 시 공급주택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해당지역에 배정합니다.
- ※ 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거주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6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40% 물량의 기타지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와 다시 경쟁합니다.
- ※ 동일순위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 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별도의 지역 우선공급 거주제한기간(1년)이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은 기타지역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일반공급1순위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개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등의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공계약체결일**
 -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원납일**
 -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해당 공고문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사업주체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유형별(생애최초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를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및 유의사항**

-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일괄 조회** 할 예정입니다.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건 물</td> <td colspan="2">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r> <td>시설물</td> <td colspan="2">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34,960천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연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연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1년식 자동차를 2020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4. 소득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 소득기준 적용

- 사업주체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단위: 원)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생애최초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잔여공급(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7,839,208	9,222,467	9,222,467	9,611,741	10,111,430	10,611,119	
신혼부부	우선공급(70%)	배우자소득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030,160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잔여공급(30%)	배우자소득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7,839,208	9,222,467	9,222,467	9,611,741	10,111,430	10,611,119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8,442,224	9,931,887	9,931,887	10,351,106	10,889,232	11,427,359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384,376원) 추가

- 가구원수 산정 기준 :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공급유형별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를 포함하여 산정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 하여 산정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

구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 기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위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가구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신청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소득 조사방법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표4>의 **소득자료 출처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 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 자료→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모호처 모호대상자 보상급여 및 모호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부적격소명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표4> 조희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초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I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22.)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7조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관계기관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사업주체는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구분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우수선수,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남북피해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세종시 입주기업 종사자 등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특별공급대상자 추천기관 :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지자체(장애인),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무소(북한이탈주민), 국가보훈처(장기복무 제대군인), 국방부(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한국산업인력공단(우수기능인), 대한체육회(우수선수),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근로자), 지자체(의사상자), 통일부(남북피해자), 지자체(다문화가족), 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지자체(세종특별자치시 입주기업종사자 등) 등

■ 유의사항

- 기관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성년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기관추천대상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청약 Home)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 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22.) 현재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2003.02.23 ~ 2022.02.22)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예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단위: 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공회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별도의 지역 우선공급 거주제한기간(1년)이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은 기타지역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60%를 우선배분**하고, 나머지 40%는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배분합니다. 지역 우선공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II. 신청기준의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및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되, 동점자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무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5명 이상 4명 3명	40 35 30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2003.02.23.~2022.02.22. 기간 중 출생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2명 1명	15 10 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2016.02.23.~2022.02.22. 기간 중 출생자)의 자녀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5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 기간 (4)	20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20 15 1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해당 시도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5 10 5	공급신청자가 세종특별자치시 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무주택 기간(4) 산정 : 신청자가 만19세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되, 신청자 및 배우자가 각각의 과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체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5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3년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신청자가 만19세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예3)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22.) 현재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6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단위: 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 예시 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별도의 지역 우선공급 거주제한기간(1년)이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은 기타지역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60%를 우선배분**하고, 나머지 40%는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배분합니다. 지역 우선공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II. 신청기준의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및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되,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 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22.) 현재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으로서 **세대주이며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3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주택법」 제63조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입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⑥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인 분**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
(단위: 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잔여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7,839,208	9,222,467	9,222,467	9,611,741	10,111,430	10,611,119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별도의 지역 우선공급 거주제한기간(1년)이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은 기타지역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에게 잔여공급 합니다.
- ①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우선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60%를 우선배분하고, 나머지 40%는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배분합니다. 지역 우선공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II. 신청기준의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및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② 2단계 잔여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 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60%를 우선배분하고, 나머지 40%는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배분합니다. 지역 우선공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II. 신청기준의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및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양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계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22.) 현재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사업주체로 제출해야 하며, 미중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도 한부모가족으로 신청 가능하나, 자녀는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단위: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잔여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7,839,208	9,222,467	9,222,467	9,611,741	10,111,430	10,611,119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8,442,224	9,931,887	9,931,887	10,351,106	10,889,232	11,427,359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해당제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급회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별도의 지역 우선공급 거주제한기간(1년)이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은 기타지역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3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자에게 잔여공급 합니다.

①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아래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60%를 우선배분하고, 나머지 40%는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배분합니다. 지역 우선공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II. 신청기준의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및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순위 내에서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② 2단계 잔여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아래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60%를 우선배분하고, 나머지 40%는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배분합니다. 지역 우선공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II. 신청기준의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및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 (출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합니다.
-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하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예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항 목	기 준	비 고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 1점	-
나. 자녀의 수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마. 혼인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선택 불가
자녀의 나이 (한부모가족에 한함)	2세 이하(만3세 미만)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만5세 미만)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만7세 미만) : 1점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 '가. 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단위: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4,824,128	5,675,364	5,675,364	5,914,918	6,222,418	6,529,919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 소득은 사업주체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자세한 사항은 이 공고문의 '소득기준'을 참조)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자녀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를 말함을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예비)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다. 혼인기간' 관련 :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22.) 현재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가능합니다.
 - ※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해당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별도의 지역 우선공급 거주제한기간(1년)이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은 기타지역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러 입주 시(입주지정기간 초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60%를 우선배분하고, 나머지 40%는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배분합니다. 지역 우선공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II. 신청기준의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및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해당 주택건설지역과 기타지역 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 1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2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 세대주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2순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해당 사항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2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II. 신청기준의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 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만32세 미혼(만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 예시6 : 현재 만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음

IV 신청 시 확인사항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한국부동산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해당제한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제한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해당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의 청약제한사항은 각자의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전매 금지 및 해당제한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외의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4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특별공급(장애인, 신혼부부 등)으로 공급된 주택은 **5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됩니다.
 -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 ※ 「주택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소유권을 해당 전매제한기간 내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며, 부기등기는 「주택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진행되고,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이 명시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재당첨제한은 10년**이 적용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3.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인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p>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p> <p>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p> <p>※ 신청자격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와 ③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p>
신청방법	<p>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일자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청약 Home)에 청약을 하고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주택 우선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인증서류를 제출해야 함</p> <p>② 자격인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포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p>

4.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의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처리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단지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합니다.(후당첨 단지 부적격처리 됨)
-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단,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외 예비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 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공통 적용사항**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사업주체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엘리프세종 6-3 견본주택(사이버견본주택) 방문 또는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50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천으로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합니다. 각 주택형별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급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선정의 경우 'II. 신청 기준'의 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V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2.03.04.(금) (청약 Home : 09:00 ~ 17:30)	인터넷 청약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스토어에서 "청약 Home" 검색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현장접수 가능 *접수시간 10:00 ~ 14:00 *건본주택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1-4번지
일반공급 1순위	2022.03.07.(월) (청약 Home : 09:00 ~ 17:30)	인터넷 청약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스토어에서 "청약 Home" 검색 *청약통장 가입은행 청구
일반공급 2순위	2022.03.08.(화) (청약 Home : 09:00 ~ 17:30)		

2. 신청 시 유의사항

- 동·호세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신청기한이 지나면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스마트폰: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은행 업무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은행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고, 사전에 청약이 가능한지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청약 Home)의 '모집공고단지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신청 대상자 중 정보 취약계층 등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와 동일)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하여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엘리프세종6-3 건본주택 ☎ 044-865-6177)
- 공급유형(국가유공자·기관추천·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VI 신청방법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코로나19 확산 및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국부동산(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 Home"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신청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 그 외 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를 소지하고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인증서는 은행 또는 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증권용 공동인증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 신청시간 : 09:00 ~ 17:30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신청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 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 특별공급 방문접수 (건본주택, 10:00~14:00) : 고령자·장애인·인터넷 취약자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목록상의 필요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은행 창구 접수 불가)
- ※ 일반공급 방문접수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 고령자·장애인·인터넷 취약자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청약접수를 할 수 있으며, 아래의 구비사항을 모두 구비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은행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은행에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본주택 접수 불가)
-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일반공급 접수(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방문접수)시 구비사항

-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신청 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및 대리신청 시 준비서류 등 위 표의 구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며 증빙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등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이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접수하며,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고, 당첨자에 한하여 청약자격은 사업 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청약자격이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기간 사전청약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여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 후 신청하여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 청약접수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VII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계약체결(당첨자)	서류제출(예비입주자)	예비입주자 등호 추첨 및 계약일정
2022.03.15.(화)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	2022.03.16.(수)~03.27.(일) 10:00~17:00	2022.04.18.(월)~04.24.(일) 10:00~16:00	사업주체 홈페이지 고지 (www.엘리프세종6-3.com)	사업주체 홈페이지 고지 (www.엘리프세종6-3.com)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1-4 엘리프세종6-3 건본주택				

- ※ **예비입주자 등호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사업주체 홈페이지(www.엘리프세종6-3.com)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순 은행 청약자)	
이용 기간	2022.03.15.(화) ~ 2022.03.24.(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 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 - 스마트폰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안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 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03.15.(화) 08:00(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인터넷 당첨자 확인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 여부는 사업주체 홈페이지(www.엘리프세종6-3.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휴대문 문자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 여부는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 특별공급(기관추천·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등·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 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소유 여부, 과거 당첨 사실 여부 및 소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당첨자 및 등·호수 배정 발표 후 서류제출에 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명단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2.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간 (예비입주자 : 추후 사업주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2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주 등록 또는 변경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 모두 포함하여 표기되도록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 서류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 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 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 공공계약 및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포함하며, 전자수입인지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납부함) 및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필수	추가 (해당자)	서유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유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②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체포함'으로 발급
	○	(전체 포함)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본인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③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경우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명서류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22.)로 발급(출입국가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발급)

■ 특별공급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①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주민등록표 등본 (전체 포함)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자산·소득 조회용)	본인 및 세대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 만 14세 이상의 세대 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제외
	○		④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경우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명서류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	⑦ 임신증명서류(상세)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소득산정 시 가구원 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⑧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22.)로 발급(출입 국가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발급) •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의 존,비속을 배점에 산정한 경우
	○	③ 한부모가족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④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의 경우 	
	○	⑤ 임신 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건본주택 비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②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 확인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④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자 	
	○	⑤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22.)로 발급(출입 국가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예비)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예비신혼부부로서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③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예비)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의 경우 	
	○	④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예비)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신혼부부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건본주택 비치) 	
	○	⑥ 임신 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건본주택 비치)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②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④ 자격입증서류 (아래 <표6> 참고)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6>의 자격입증서류 	
	○	⑤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6> 참고)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6>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표6>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세무서/국세청(홈택스)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건강보험공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 (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① 세무서/국세청(홈택스)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세무서/국세청(홈택스)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2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①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무통장 입금증) ※ 분양대금, 발코니확장 대금, 추가선택품목 계좌가 모두 다르며, 계약금 확인 후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③ 인감도장(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본인 발급분에 한함) 단, 서명날인 시 본인만 계약가능	
	④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엘리프 세중 6-3 홈페이지(www.엘리프세중6-3.com) 게시 예정] 및 증빙자료 ※ 자격 검증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요청한 서류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방식	본인서명확인서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 서명날인 시 본인만 계약 가능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용(위임용)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VII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사이버 건분주택) 및 모집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를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및 선택사양품목 가격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자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기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 주체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주체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수분양자는 동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일부 터 30일 이내에 '주택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증빙자료 포함)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체결 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증빙자료 포함)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로 미제출 시 수분양자가 직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모두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로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 개인의 신용불량 등 중도금 금융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나 **개인사정으로 대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융기관 선정 불가할 경우 본인 자금으로** 직접 해당 납기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연체이율(연행 6.5%, 변동 가능)이 가산됩니다.
- ※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격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가능하나, 정부의 관련정책,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한도축소 등의 사유로 인해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고, 계약자 자기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 및 대출취급상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 제한 등) 등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약 접수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대출취급상품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대출에 필요한 중도금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중도금보증서의 발급가능 여부에 따라 대출알선조건이 변경 또는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 대출보증조건 강화에 따라 대출 보증건수 및 보증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에 의해 입주시점의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 원리금 상환조건 등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사업주체는 대출기관과 협약 후 계약자에게 제시한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한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대출알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대출을 알선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진행에 따라 모집공고에 기재된 날짜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에 분양계약제치 요구, 중도금 대출 신청 거부, 발코니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대금 납부 거부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중도금 대출 신청 및 기표 일정이 공급대금의 각 납부회차 이후일지라도 이전 회차의 공급대금까지 함께 기표하여야 합니다.
- ※ 대출은행과의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정보제공 미동의에 따른 대출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에 책임지지 않음)
- ※ 대출알선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서류의 미제출시 사업주체는 대출을 알선 하지 않습니다.
-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종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정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대출 알선이 불가하며,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오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절차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구 및 단지 여건

■ 지구

- 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진행 중이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 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 될 수 있음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 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외의 도로 및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주변도로, 공공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워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서측에는 보도연맹 희생자 추모공원(문화6-12)이 계획되어 있음
- 당해 지구의 특화권역 및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 등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당해 지구 북측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이격거리(직선) 약 430m 지점]
- 지구 및 단지외부여건은 추후 정부정책이나 상위계획,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동측에 송전탑이 위치하고 있음

■ 학교 개교 시기

학교	위치	학교명(가칭)	개교시기
초등학교	초6-3	산울초	미 정
중학교	중6-3	산울중	미 정

- 전·입학, 학교편성, 학교운영 등 관련 안내사항은 세종시교육청 전입학 원스톱 지원센터(☎ 044-320-2161~3)로 문의
- 초등학교(초6-3)는 입주시 산울초등학교(가칭)로 배치될 예정임
- 중학교(중6-3)는 입주시 산울중학교(가칭)로 배치될 예정임
- '초등학교 및 중학교 통학구역'은 교육청에서 개교 전에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고시되므로 변경될 수 있음
- 학교설립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인접 동에 소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 상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특례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학생수용계획, 기타 여건 변경에 따라 학교 설립시기와 계획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외부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의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접 공원, 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하며 입주 후 노선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지구 북측에 세종필드G.C(골프장)가 운영 중이며,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북서측에 은하수공원(장례식장 등)이 위치해 있음
- 본 단지 북서측, 남서측으로 26m 도로 등이 인접하여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도로의 제원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 주변으로 지형의 고저차로 인한 조망 등의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레벨차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주·부출입구에는 가감속차로가 별도 시공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문화공원 등)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동측으로 연결녹지가 연결하여 계획되어 있음
- 단지 주변 도로 및 상업시설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요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전·출입시 인접(인근) 원형교차로 이용을 인지·수인해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와 인접하여 전력공급을 위한 전선로, 지중화용 지상기기, 전력시설물, 통신시설물, 수도시설물, 노상시설물(전주, 가로등 등), 공공기반시설물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부

[단지계획]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경계선은 실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설물의 위치·구조·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와 지반현황 및 각종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식재,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출입구, 건축 및 토목옹벽, 문주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및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보도, 조경, 주차장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단지 경계부는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에 따라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단지 내 조명(아파트 옥상 및 옥탑 경관조명 포함)에 의한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경계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근린생활시설 전면부 포함)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물건 상하차 를 위한 차량 포함)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어린이놀이터 포함), 운동시설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소방전용도로의 경우 추후 관할 소방서 협의결과에 따라 추가·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자동크리넷 시스템을 적용하며, 동 인근에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를 위한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 됨. 또한 단지내 지반 높이에 따라 계단이 설치될 수 있음
-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 및 자동크리넷은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후 설치될 예정이며 개소는 실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냄새, 소음, 조망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나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동 주변에 지하주차장 팬룸 환기구, 기타 지상 돌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
- 지하1,2층에 전기실, 발전기실 등 공용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등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음
- 무인택배보관함 및 스마트우편함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며, 무인택배보관함은 각동 지하1층주차장, 스마트우편함은 각동 코어별 지상1층 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계절창고는 각동 지하1층에 위치함
- 주민공동시설의 냉·난방기 실외기는 내부에 설치되어있음
-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되며, 해당 공법 적용에 따른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에 발생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됨
- CCTV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각 동 출입구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지하주차장에 설치됨
- 단지 주·부출입구에 디지털차량번호인식시스템의 주차관제(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됨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문양 등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 및 내부 건축계획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본 단지 조경용수 공급을 위한 우수처리시설 가동으로 공동전기료가 발생함

[동별현황]

- 중동 필로티가 설치된 상부세대(401동 3호라인, 402동 2.3호라인, 403동 1.2.3호라인, 404동 1.4호라인, 405동 1~4호라인, 406동 3.5호라인, 407동 1.2.4호라인, 408동 4호라인, 409동 1.2.3호라인, 410동 1.4호라인, 411동 4호라인, 414동 1.4호라인)의 경우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이 혼용 배치된 주동(401동, 402동, 403동, 404동, 405동, 406동, 407동, 409동, 410동, 414동, 416동)의 경우 소음, 빛공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으며 이에 대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단차가 있으며 그로 인하여 413,415,416동은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게 되어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각 동 전·후면 조경 공간에는 이동식피난기구(공기안전매트) 사용을 위해 일부 식재가 생략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열교환실),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통합기계실 설치위치 : 1개소(401동, 416동 인근), 열교환실 설치위치 : 1개소(405동 인근)]
- 엘리베이터의 경우, 401·402동[1·2·3호 라인/2대(15인승, 15인승), 404·410·411·414동[1·2·3·4호 라인/2대(17인승, 17인승), 408·409동[1·2호 라인/1대(17인승, 3·4호 라인/1대(15인승), 403·405동[1·2호 라인/1대(15인승),3·4호 라인/1대(15인승),406·407동[1·2·3호 라인/1대(15인승),3·4호 라인/1대(15인승),412·413·415·416동[1·2호 라인/1대(15인승),3·4호 라인/1대(15인승)]간에 1대당 사용하는 세대 라인수가 다름
- 단지 배치 특성상 일부 동·호의 이삿짐용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불가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410동 옥상에 지상파(디지털) 안테나 및 무궁화위성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수신 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일부동층은 아파트 외벽에 축리용 피뢰침이 시공됨
- **일부동 지붕층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집광판이 설치되며,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동별 설치면적 및 설치위치는 달라질 수 있음**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동 옥상과 지하 PIT공간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서비스안테나를 지하층, 옥상에 설치할 예정임.단, 설치장소 및 설치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복합재, 방과후교실, 경로당, 독서실 등),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의 내부 시설물(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공간만 제공됨. 단, 피트니스센터 운동기구는 사업주체 지침에 따라 최초 입주 시에 제공될 예정이며 제공되는 운동기구(의자, 소파 등 이동식기구 등 기타 비품은 일체 제공되지 않음)의 종류 및 사양 등에 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에는 차량 진·출입 시 경보음 발생과 차량전조등 불빛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 단지명칭·동표시·아파트 문양·비로그·벽체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의해 일부 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고, 강우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배치도 상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등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내부마감이 없으며 별도의 실(室)로 사용할 수 없음
- 아파트 지하 PIT층 문은 관련법규에 따라 점검구로 설치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에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공동전기료가 발생됨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 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전기공급용 개폐기(PAD S/W)가 설치 될 수 있으므로 미관저해 및 조망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전기실, 발전기실, DA의 설치 위치에 따라 세대별로 소음 및 분진 등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해제, 해지, 하자 보수 등 민원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위치를 확인 후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여야 함

[주차장]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지하1층은 2.7m로, 지하2층은 2.7m로 계획되었으며, 지하1층의 경우 소형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함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2개소이며, 아파트 주차대수는 지하 1,410대(지하2층 873대, 지하1층 537대)이며, 그 중 47대(지하2층 24대, 지하1층 23대)는 장애인 주차장임 (장애인 주차대수는 동별로 상이함)
- 416동은 지하1층 부대시설 배치로 인하여 동출입구가 없음, 지하2층 동출입구를 이용하여 주차장 접근이 가능함.
- 근린생활시설(상가)와 아파트 주차장 입구는 분리 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상가) 주차대수는 지하 1층에 36대임
- 계획여건에 따라 주차구획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설비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4항 제5항 및 제16조)**
-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과 각 동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이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동별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음
- 주차장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 인근 주차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주차 구역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팬이 설치되어 있으며 팬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설비 가동 시 소음,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랜치의 일부 구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은 무기질계 뽀칠로 시공됨
- 지하주차장 내 경사로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함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됨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 배치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 세대

- 각 세대의 현관 및 현관 팬트리, 발코니, 실외기실은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음
- 각 세대의 상하부 세대 평면이 상이한 경우, 상하부 세대 돌출로 인하여 조망, 일조, 빛 또는 소리의 반사 등 다양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동별옥상에는 공용배기방식의 환기팬(주방 환기용) 및 무동력흡출기(욕실 환기용)가 있어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이와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에는 불특정 업종이 입점할 수 있어 인접세대에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각 층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의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상이하여 환기 및 채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 차이가 있음
- 사이버 주택전시관,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성능향상 등을 위해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 주택전시관, 카탈로그,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 사이버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거실월패드, 배선기구, 스위치, 조명기구,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등의 위치 및 제조사는 실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의 경우, 욕실의 급수, 급탕 매립박스 및 일부 설비배관이 노출될 수 있어 추후 입주자 시공 시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배기팬 설치로 인해 외부 오염된 공기 또는 냄새가 욕실 내부로 유입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의 경우, 주방기구 상부장에 설치되는 주가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상부장 부착 시 설치 요청을 받아 시공사가 설치하며 렌지후드는 공용배기시스템과 연동되는 제품으로 입주자가 설치해야 함
- 욕실장 뒷면은 벽체 타일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기구 하부와 후면벽체에는 마감자재(강화합판마루, 주방벽타일)가 설치되지 않음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형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천장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평형별로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음
- 욕실팬 작동 직후에 댐퍼가 열리는 동안 운전음(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바닥재,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은 실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벽지(도배) 공법상 초배지+정배지 봉투바름 시공 시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음
- 실외기실이 내부에 있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음
- 거실 아트월 및 주방벽 하부는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 출입문(부부, 공용)은 습기(물기)를 고려하여 PVC계통(ABS) 도어로 시공됨
- 욕실 천장재는 ABS 판넬로 시공되며 욕실 천장에 점검구가 시공될 예정임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 (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길이가 서로 상이함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공사용 하드웨어는 실시공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본공사 시 달라질 수 있음
- 세대 천장고는 2.4m로 시공오차에 의해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불박이장류(신발장, 침실 내 불박이장(읍선선택 시 해당),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 있는 벽, 바닥, 천장은 원활한 시공을 위해 별도의 마감이 없음
- 세대 내 타일 및 아트월 나누기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은 습식욕실로 시공됨
- 세대 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강제급기+강제배기)을 적용하며 급배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저(공기배출구)는 천장에 시공되고 작동 시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방배기방식은 옥상에 배기팬이 설치되고 세대 레인지후드에는 덤퍼만 설치되는 공용배기방식을 적용함
- 수도꼭지(세탁, 손빨래, 물뿌리개)가 없는 발코니 및 대외공간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음
- 입주자가 별도 설치하는 가전제품 및 가구의 용량(규격) 차이로 인해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카탈로그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 가동으로 전기요금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됨
- 세대 무인경비 동작감지기는 1,2층 및 최상층 발코니와 침실의 창호 측면부 각 1개소에 설치되며, 그 외 층 동작감지기는 거실 창호 측면부 1개소에 설치됨
- 생활정보기가 설치되며, 일괄소동, 날씨정보 및 가스차단 기능을 함
- 홈네트워크시스템 세대단말기(WallPad10*LCD)는 게이트웨이와 통신하며 방법서비스(도어카메라, 현관차석감지기 및 동작감지기와 연동), 제어서비스(가스밸브차단, 거실 및 침실1 네트워크스위치조명, 난방온도, 디지털도어록), 비상상황 알람 서비스(부부욕실 비상호출기), 대기전력차단서비스(대기전력차단스위치 연동), 단지공용기본서비스(공동현관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차량통제시스템연동)를 제공함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전파방해, 난시청 등으로 인하여 TV 및 라디오, DMB방송 일부 채널 수신에 불량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전기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및 전열교환기 전원용 콘센트 등 주방발코니에 한하여 설치됨**
- 각 동에 설치된 승강기, 승강로 및 승강기 기계실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위치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외기실 조명기구: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자동빨래건조대가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자동빨래건조대 자체조명이 리모콘으로 점등되어 별도의 조명기구는 설치하지 않음
- **세대분전반 및 세대단자함은 침실내에 노출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설치되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무선랜(무선AP) 초기비밀번호는 입주 시 안내될 예정이며, 입주 후 비밀번호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현관, 발코니, 욕실 단차는 바닥구비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걸림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발코니 내 하양식피난구는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사육,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경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등으로 시공되기 때문에 입주 후 중량물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을 사용할 경우 거치물의 낙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 필요)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반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타입별 발코니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주방자동소화장치 또는 레인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간섭되는 경우 상부장 일부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음
- 주방 상부장이 천장과 이격시공으로 일부 배관 및 배선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타입의 경우 냉장과 및 김치냉장고 유상옵션 미선택시 일반 김치냉장고가 팬트리 내부에 설치되며 제품사양에 따라 팬트리내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타입의 경우 한정된 주방 사이즈로 인하여 원하시는 사이즈의 식탁 배치등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전 충분히 견본세대·모형 및 분양자료 CG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타입의 경우 한정된 거실 사이즈로 인하여 원하시는 사이즈의 소파 배치등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전 충분히 견본세대·모형 및 분양자료 CG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 배관,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며 침실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급수·급탕계량기 및 열량계는 층별 공용 PD에 설치됨
- 주방가구, 불박이장(읍선선택 시 해당), 조명기구, 소화용기구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며, 카탈로그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시공 시 선정된 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자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역난방방식 난방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발생하는 과도한 세대 난방요금 등은 하자가 아니며, 입주초기 공실세대로 인한 공용부위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풍통의 위치와 개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는 환기설비장치 및 우·우수 배관 등의 설치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천장, 벽)로 시공되며,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非)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하여야함
- 기본설치 품목(읍선 선택시 해당없음)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전(全)실에 설치되며,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2·3 및 알파룸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설치됨
- 해당 단지는 2022년 1월 17일 주택건설사업승인이 완료된 사업장으로 바닥충격을 사후확인 미해당 사업장임

■ 일반 사항

- 단지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세종특별자치시와 체결할 예정이나,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적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수분양자의 대지소유권이전은 6-3생활권 사업준공예정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예정된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후 불발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인한 층간, 세대 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주택전시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역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단지출입문 문주 디자인 등의 변경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잔금완납 포함)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함
- 분양안내책자(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치수는 카탈로그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 또는 끝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사이버 주택전시관, 카탈로그,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일러스트(그림)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음
- 주택전시관(견본주택) 및 모형은 공급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예정임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되어 개별 세대에 부과됨
- 각종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시공 시 현장여건 반영, 구조 및 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카탈로그 등)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시공은 준공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됨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 내 침실별 가구를 개별적으로 추가설치 시 필요 실측하여 설치해야함

4.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주택법」 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표시함

성능부문	성능변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소음관련 등급	경량충격음		★★★★
	중량충격음		★★★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		★
	화장실 급배수 소음		★
구조관련 등급	내구성		★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공용부분		★★	
환경관련 등급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에너지 성능		★★★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신·재생에너지 이용		★★★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저탄소 자재의 사용		★★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빗물관리		-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절수형 기기 사용		★★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연계된 녹지축 조성		-
	자연지반 녹지율		★
	생태면적률		★
	비오톱 조성		-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자연 환기성능 확보		-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생활환경 등급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대중교통의 근접성		★★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 제공		★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방범안전 콘텐츠		★★
화재·소방 등급	화재·소방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 성능	★
	피난안전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피난설비	★★★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대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음

5.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 용
외벽(직접면)	적 용
외벽(간접면)	적 용
창호(직접면)	적 용
창호(간접면)	적 용
지붕	적 용
바닥(직접면)	적 용
바닥(간접면)	적 용
바닥(층간바닥)	적 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 용
일괄소등스위치	적 용
고효율LED	적 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 용
절수설비	적 용
고효율설비	적 용

6.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구 분			전용면적 60-85㎡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65,746,326
			기간이자	985,296
			필요적 경비	70,168
			그 밖의 비용	5,325,458
			계	72,127,248
건축비	공사비	토목	토공사	181,443
			흙막이공사	-
			비탈면보호공사	-
			옹벽공사	-
			석축공사	62,098
			우·오수공사	126,474
			공동구공사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472,408
			도로포장공사	347,549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21,420
			정화조시설공사	-
			조경공사	4,987,702
			부대시설공사	2,470,741

			8,669,835
	건축	공통가설공사	3,379,913
		가시설물공사	261,569
		지정 및 기초공사	283,571
		철골공사	-
		철근콘크리트 공사	28,153,728
		용접공사	-
		조적공사	2,192,373
		미장공사	2,713,121
		단열공사	3,455,781
		방수·방습공사	2,967,069
		목공사	4,105,350
		가구공사	2,773,192
		금속공사	1,661,256
		지붕 및 환통공사	235,277
		창호공사	8,347,097
		유리공사	1,911,792
		타일공사	2,595,869
		돌공사	4,607,269
		도장공사	2,273,776
		도배공사	1,200,947
		수장공사	1,579,731
	주방용구공사	-	
	잡공사	1,911,493	
	계	76,610,174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1,893,947
		급탕설비공사	1,213,831
		오배수설비공사	6,298,520
		위생기구설비공사	3,220,945
		난방설비공사	3,759,894
		가스설비공사	724,125
		자동제어설비공사	-
		특수설비공사	-
	공조설비공사	407,286	
	계	17,518,548	
	그 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15,289,829
		정보통신공사	6,789,806
		소방설비공사	407,286
		승강기공사	2,284,261
	계	24,771,182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4,940,297
		이윤	2,674,013
		계	7,614,310
	간접비	설계비	2,415,715
		감리비	905,893
		일반분양시설 경비	2,214,405
		분담금 및 부담금	246,045
		보상비	-
		기타 사업비성 경비	4,182,766
		계	9,964,824
	그 밖의 비용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22,760,882
	합계		240,037,000

■ 택지비(전용면적 60㎡ 초과)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

감정평가금액(산출평균액)	가. 나라감정평가법인	나. 리얼티뱅크감정평가법인
65,879,316,500	67,781,344,000	63,977,289,000

7.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사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	택지비 가산비					
	계	기간이자	말뚝박기 공사비	압석지반 공사비	흙막이 공사비	기타 비용
금액	6,393,829	987,289	2,467,064	249,194	2,619,972	70,310

항목	건축비 가산비												
	계	법정초과복리시설설치비용	공동주택성능등급가산비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친환경주택건설추가비용	법령개정에 따른 추가건설 가산비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지하주차장충고증가추가비용	사업승인 부가조건 가산비	
				홈네트워크	초고속정보통신특등급	에어컨냉매배관	기계환기설비	쓰레기이송설비				저층부	커튼월
금액	22,806,922	3,290,542	3,235,134	3,904,987	1,868,818	1,520,945	2,427,941	2,657,816	2,103,944	230,196	403,529	346,801	816,270

8.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감리금액 및 회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블록	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8,650,000,000원)
6-3 M4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129-82-10595)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314-81-07954) 금호건설 주식회사(104-81-31309) 이수건설 주식회사(206-81-40254) 흥한주택종합건설(주)(613-81-04683) (주)신흥디앤씨(504-81-46827)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314-81-07954) 금호건설 주식회사(104-81-31309) 이수건설 주식회사(206-81-40254) 흥한주택종합건설(주)(613-81-04683) (주)신흥디앤씨(504-81-46827)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주식회사 대성CM건축사 사무소 (105-86-72502)

9. 엘리프세종6-3 공식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안내

사이버 주택 전시관	분양문의
www.엘리프세종6-3.com	■ 엘리프세종6-3 분양상담 대표번호 : 044-865-6177 (10:00 ~ 17:00)
엘리프세종6-3 견본주택(서류 접수, 계약)	
 <p>견본주택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1-4번지</p>	<p>■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1-4 일원</p> <p>■ 관람기간 :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청약 전 견본주택 사전 관람은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 운영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p> <p>※ 당첨자에 한해 서류접수기간 동안 견본주택 관람을 실시할 예정입니다.</p> <p>※ 계약기간 및 예비당첨기간 내 견본주택 관람은 불가합니다.</p>

2022. 02. 22.